

## 미국판례 2

10 대 미혼부 이름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Hawkins v. Multimedia

344 S.E. 2d 145(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대법원 판결, 1986. 3. 11)

### 사건개요

멀티미디어사(피고)는 10 대 미혼모 문제를 보도하면서 원고인 크레이그 호킨스(미성년자)가한 사생아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거명하였다. 그런데 기자는 크레이그에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질문을 하였을 뿐 그의 이름을 보도하는데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호킨스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1,500 달러의 현실적 손해와 25,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이에 멀티미디어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판결이유의 요지

정당한 공공적 내지는 일반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지만, 공공의 관심사인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로서 배심원들이 결정하여야 한다.

## 판결이유

네스대법원장 집필

이 소송은 미성년자인 피상고인 크레이그 호킨스가 상고인 멀티미디어사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다. 크레이그는 멀티미디어사에 대하여 1,500 달러의 현실적 손해와 25,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신평결을 얻었다. 우리는 이를 유지한다.

멀티미디어사는 10 대들의 임신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신문에 보도하였다. 측면의 한 기사는 크레이그를 한 사생아의 아버지로 지목하였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10 대 미혼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 10 대 미혼모가 멀티미디어사의 기자에게 크레이그가 그녀의 아기의 아버지라고 말해주었다. 기자는 크레이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크레이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 대화를 나누었다. 기자는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크레이그와 통화를 하였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크레이그는 질문에 답하기를 주저하였고, 3,4 분만에 통화를 끊어버렸다 어느 통화에서도 기자는 크레이그의 이름을 지목하거나 인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구한 바 없었다.

사실심은 멀티미디어사의 이익을 무시 하고 배심원들에게 미성년자는 그의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교시하였다 멀티미디어사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까지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청구원인이다. 피고는 피해자가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동의는 피고가 주장하여야 할 항변이기 때문에 피고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른 일방에 의하여 제안된 무엇을 하는데 대한 자발적 합의가 있고, 동의하는 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책임능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사는 크레이그의 동의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크레이그가 통화를 즉각 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통화는 짧았고, 그는 매우 창피해 했다. 기자는 크레이그에게 신문기사에 그의 이름을 써도 되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 크레이그는 그 신문이 10 대의 임신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의 이름이 신문기사에 나리라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크레이그가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결정할 기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멀티미디어사는 다음으로 이 사안은 일반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실심 판사가 자신의 승소평결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적 또는 일반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관한 보도를 금할 수는 없다 공공적 또는 일반적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도가치성(newsworthiness)이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미체 대 AP 통신사건(Meetze v. Associated Press, 230 S.C. 330, 95 S.E.2d 606, 1956)에서 12 세 소녀의 아이출산은 당연히 공공의 투심을 자극할 생물학적 사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어떤 사실이 공공의 관심사인지 여부는 배심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배심원들로 하여금 결정토록 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멀티미디어사는 또한 사실심 판사가 악의가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악의는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만 문제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사실심단계에서 제기된 바 없고, 따라서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될 수 없다 멀티미디어사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고, 대법원규칙 즉 제 23 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인용한다.